

계약학과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동명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 2011.7.1., 2016.5.30.)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

1.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2. “계약요청기관”이라 함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계약학과 설치를 요청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6.5.30.)
3. “계약체결기관”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계약학과의 설치를 협약 하였거나 이미 설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을 말한다.(개정 2016.5.30.)

② 이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6.5.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정 2009.12.1.)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개정 2009.12.1)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정 2009.12.1.)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개정 2009.12.1.)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개정 2009.12.1.)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3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신설 2016.5.30.)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제3조(설치요건)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1. 계약요청기관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계약요청기관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4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과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12.1, 2011.7.1, 2012.6.26, 2012.11.20.)

② 계약학과의 정원은 본 대학교 학위과정별로 책정된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호인 경우 계약학과의 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 2011.7.1.)

③ 계약학과의 설치에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요청기관의 요구가 반영되어 기존 학과(부)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학과의 책임교수) ① 계약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 등을 위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는 교무처장이, 대학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 2011.4.18. 2012.6.26., 2012.8.1., 2018.7.1., **2023.9.1.**)

② 계약학과 책임교수는 해당 계약학과 학생의 지도교수를 겸보한다. 단,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09.12.1, 2011.4.18. 2012.6.26., 2016.5.30.)

제7조(운영위원회 등)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기관과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세부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계약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30.)

제8조(입학 및 학습의 구분) 계약학과의 입학은 신입학, 편입학으로,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 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으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편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학생의 선발) ① 학생의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고사, 면접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학년도 및 학기) 학년도 및 학기는 학칙 제9조에 따른다.

제12조(수업 및 일수)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그 밖의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 편성은 계약체결기관이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 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계약학과 학점인정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에서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6.26., 2012.8.1., 2018.7.1., **2023.9.1.**)

제15조(졸업 및 수료학점) 계약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학사과정은 본 대학교 「학칙」에 준한다.(개정 2016.5.30.)

② 석사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개정 2009.12.1., 2016.5.30.)

제16조(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 및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09.12.1., 2011.7.1.)(개정 2016.5.30.)

제17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개정 2009.12.1.)(개정 2016.5.30.)

제18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하는 학부는 교무위원회의,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요청기관 등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다.(개정 2009.12.1., 2016.5.30.)

② 설치·운영기간은 1년6개월 이상으로 하되, 계약요청기관과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

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또는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6., 2016.5.30.)

② 계약학과 재학(적) 중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그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하며, 등록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30.)

제20조(등록금 등) ①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운영경비등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②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6.26.)(개정 2012.6.26.)

③ 제3조제1호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3조 제2호인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 등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6.26.)

④ 등록금 등은 본 대학교의 고지에 의하여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되고,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개정 2016.5.30.)

제20조의 2(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비 등의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신설 2009.12.1)

제21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요청기관과의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요청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3장 보칙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30.)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제11조 제3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계약학과 명칭 및 학위명 중 건축공학과 건축기술전공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1> 계약학과 명칭 및 학위명 중 석사과정의 컴퓨터미디어공학과,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향만물류시스템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언론영상광고학과, 디자인학과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6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9.12.1, 2011.7.1, 2012.6.26, 2012.11.20., 2013.3.25., 2016.5.30.)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명칭 및 학위명

| 구분 | 학과명 | | 년도별 모집정원(명) | | | | | 학위명 |
|------|---------|----------------------|-------------|------|------|------|------|----------------------|
| | 모체학과 | 계약학과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 학사과정 | 자동차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정밀기계시스템전공 | 40 | 0 | 40 | 0 | 40 | 공학사 |
| | 냉동공조공학과 | 냉동공조공학과 냉동공조시스템전공 | 0 | 0 | 40 | 0 | 40 | 공학사 |
| | 경영학과 |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 0 | 0 | 40 | 40 | 40 | 경영학사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40 | 40 | 40 | 0 | 40 | 사회복지학사 |
|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과 건축기술전공 | 0 | 0 | 40 | 40 | 40 | 공학사 |
| 석사과정 | 유아교육학과 | 유아교육학과 (계약학과) | 0 | 20 | 0 | 20 | 20 | 유아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전공)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계약학과) | 20 | 0 | 20 | 20 | 20 | 보건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전공)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7.1.,2012.6.26. 2016.5.30.)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대학교명 : 동명대학교 총 장 :

주소 :

“을” 산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갑”과 “을”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제9조와 동명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을” 이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 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과정 | 학위종별 | 모집정원 | 설치 운영 기간 | 교육장소 |
|------|------|------------------|------|------|-----------------------------------|-----------------|
| ○○학과 | 주/야 | 학사/석사 (신입/편입) | ○○사 | ○○명 | 20○○.○○. ~ 20○○.○○. (○년) | 교내 / 교외주소 |

제3조(학생 선발·입학) ①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을”의 소속직원 중 “을”이 추천 한 자로서, “갑”은 “갑”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 한다.

② “을”은 소속직원의 추천서에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 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고,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갑”과 “을”이 연 1회 이상 협 의하여 편성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동명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① “갑”은 “을”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을”은 학생이 업무 부

답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② “을”은 가을학기 개시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을”과 “을”의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을”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

2. 학생 분담비율 : ○○%

③ “갑”은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을”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을”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을”은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갑”은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을”은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갑”은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갑”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을”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을”이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갑”은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동명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동명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 제9조제4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③ 학생이 이 계약서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고,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그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학교명 : 동명대학교 총장 : (인)
주소 :

“을” 산업체명 : 대표자: (인)
주소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6.26.,2016.5.30.)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 | | | | |
|----------|----|--|--------|--|
| 인적 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재직 사항 | 소속 | | 직위·직급 | |

상기 직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거 귀 대학이 실시해 오고 있는 『계약학과에 의한 학사·석사과정 위탁교육』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직원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및 교육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과정명 : 계약학과에 의한 학사·석사과정 위탁교육
- 학과(전공) :
- 주요 혜택 :
 - 해당 교육과정에 관련된 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학부학생만 인정)
- 개설 학기 : _____년 1학기
- 강의 장소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소속기관 대표 : _____ (인)

동명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7.1, 2012.6.26.)

계약학과 학점인정원

| | | | | | |
|--------------------|------------------------|------------------------|--|----|--------------|
| 학과(부)명 | | 학번 | | 성명 | |
| 계약학과 관련 경력사항 | 산업체(기관)명 | 근무경력기간 | | | 전체경력합산 |
| |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개월) | | | 총 년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개월)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개월) | | | | |

| 입학구분 | 총근무기간 | 인정학점 | 해당여부(☑) |
|------|-------------|--------|---------|
| 신입생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편입생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 년 이상 ~ 년 미만 | ___ 학점 | |

※ 해당 경력에 해당하는 학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상기 경력사항을 증명할 서류(경력증명서) 1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학 과 장 : (인)

학 장 : (인)

동명대학교총장귀하